

보도 일시	2022. 12. 6.(화) 16:00	배포 일시	2022. 12. 6.(화) 08:30
담당 부서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	책임자	과 장 구성림 (044-200-4740)
		담당자	사무관 강성은 (044-200-4742)

해외 애플마켓 규율 동향 연구 결과 발표

- 거대 애플마켓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입법 및 행태규율 종합 분석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해외 애플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를 올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연구 용역 발표회 개요 〉

- (개최 시기 및 장소) 12월 6일 (화) 16:00~17:30, 공정거래위원회 중회의실
- (발표 내용) 해외당국의 애플마켓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행태적 규율 동향
- (발표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화령 박사 (연구용역 수행자)

- 이화령 박사는 지난 몇 년간 축적된 해외 경쟁당국의 애플마켓 시장분석 보고서, 애플마켓 관련 해외 입법례, 반독점 조사 및 소송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연구 결과, 애플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은 결국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요 해외 경쟁당국들은 애플마켓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적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연구는 작년 국내 애플마켓 시장에 대한 조사, 분석에 이어, 해외의 애플마켓 시장현황 및 규율 동향에 대해서 분석한 것으로, 향후 애플마켓 시장의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 및 법 집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I

연구 배경

- 모바일 앱이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면서,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지배력 남용**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 앱마켓 시장의 경쟁압력 부족과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각국은 **구조적·행태적 규율**에 나서고 있다.
- 공정위는 2021년 앱마켓 입점사업자 대상 실태조사*와 「앱마켓 시장의 경쟁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앱마켓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및 경쟁제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 * 관련 보도자료 : 「앱장터·숙박앱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1. 3. 2. 배포)
- 이러한 앱마켓 시장의 경쟁환경 조성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올해는 해외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입법 및 행태 규율 동향을 종합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

주요 내용

- ① 해외 당국의 앱마켓 시장현황 분석
 - 영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경쟁당국 및 미국 의회가 각각 발표한 시장 분석 보고서는 모두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였다.
 - 애플과 구글은 iOS와 안드로이드OS 기반의 각 모바일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앱 배포 경로를 제한하는 등 앱마켓 시장 전반에서의 경쟁압력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각 보고서는 앱마켓 시장 경쟁이 제한된 결과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가 우려되며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②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입법례

- 해외에서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앱마켓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 그간 경쟁당국이 주로 사후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해 오던 것에서 나아가,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이다.
- EU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제정 절차를 완료하여 '23.5월부터 규제 대상(“게이트키퍼”) 지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고, 미국에서는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AICOA”) 등 반독점 5개 법안*, 오픈 앱마켓법(Open App Markets Act, “OAMA”) 등이 발의된 상태이다.
 - * 온라인 선택과 혁신법 외 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데이터 이동성·호환성 보장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플랫폼 경쟁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기업결합심사 수수료 현대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사업은 DMA, AICOA, OAMA 등 각 법안의 규제 대상 플랫폼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해외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 및 소송

- 해외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 및 소송은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는바,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우 대부분 현재 조사 및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 각 사례는 앱마켓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 앱 밖의 다른 결제 옵션을 연결하거나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앱마켓 정책(안티스티어링* 조항) 등을 다루고 있다**.
- * 구글과 애플은 웹사이트 등 앱 밖에서의 다른 결제방식을 앱에서 연결하거나 앱 내에서 홍보할 수 없도록 함
- ** 미국 37개 주의 구글 제소 건, 에픽게임즈의 애플 제소 건, 애플에 대한 앱 개발자 집단소송 합의 종결건, EU의 애플 조사 건, 네덜란드 경쟁당국(ACM)의 데이팅앱 인앱결제 건 등

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해외의 시장분석 및 각종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앱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경쟁당국들도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 주요 내용들은 앱마켓 운영 투명성 제고(앱 심사절차 투명성 증진 등), 인앱결제 관련(제3자 결제 허용 등), 앱 배포 채널 간 경쟁 촉진(제3자 앱마켓 허용 등), 앱마켓 내 앱 간 경쟁 촉진(검색 결과 자사우대 금지 등) 등이다.
- 다만, 앱마켓에 대한 사전적 규율 내용과 그 방식은 입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어, 향후 진행경과와 실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최근 앱 개발사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행위 관련 자진시정을 이끌어내는 등* 앱마켓 시장의 경쟁압력 제고 및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관련 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장, 앱개발사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개최」
(2022. 11. 22. 배포)

- 이번 연구 결과도 향후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과 관련 사건처리에 참고할 계획이다.

<붙임> 거대 앱마켓 사업자 관련 주요 입법례 비교

<붙임>

거대 앱마켓 사업자 관련 주요 입법례 비교

	EU DMA	미국 AICOA	미국 OAMA
지정 및 집행 기관	EC	FTC와 DOJ 공동 선정, FTC, DOJ, 각주 AG 집행	FTC, DOJ, 각주 AG 집행
규제 대상 명칭	게이트키퍼	Covered platform	Covered company
플랫폼 종류	법에서 규정한 코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법에서 규정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플랫폼	앱마켓(app store) 사업자
양적 기준	(1) 3년간 유럽 매출 €75억 이상 or 지난 해 평균 시장가치 €750억 이상; 최소 3개 EU국에서 동일한 "코어 플랫폼 서비스" 제공 (2) 연평균 EU 영내 MAU 4,500만 명 초과, 연간 활성 이용사업체 수 10,000개 이상 (3) 지난 3년동안 최소 이용자규모 기준 충족	(1) 지난 12개월 중 어느 시기라도 미국 내 MAU 5천만 명 이상, 이용사업자 10만 이상; (2) 지난 2년 중 어느 시기의 연간 순매출 또는 지난 2년 중 어느 180일의 평균 시가총액 5천 5백 억 달러 초과 초과하였거나, 지난 12개월 동안 전세계 MAU 10억 명 이상	미국 내 이용자 수 5천만 명 초과인 앱마켓(app store)을 소유 또는 통제
질적 기준	게이트키퍼 기준: significant impact; important gateway; entrenched and durable position	핵심 거래 파트너(critical trading partner)	-
지정	기준 충족 시 2달 내 신고의무; 조사 후 집행기관에서 지정 가능	기준 충족 시 집행기관에서 지정	-
유효기간	3년	7년 (하원버전은 10년)	-
규율대상	자사우대 금지, 안티스티어링 금지, 사이드로딩 허용, 데이터 이동성 의무 등	자사우대 금지, 안티스티어링 금지, 사이드로딩 허용, 자신과 경쟁하는 이용사업자의 비공개 데이터 사용 금지 등	자사우대 금지, 안티스티어링 금지, 사이드로딩 허용, 배타조건부 거래 금지 등